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1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7월 30일, 권향엽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7월 3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9. 25.) 상정 · 제안설명
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4차 중소기업소위원회(2025. 11. 20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
반영폐기)

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11. 21.) 상정 · 소위심사
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권향엽의원)

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·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,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,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3항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성소미)

개정안은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3항 신설).

재창업기업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하며, 재창업 지원사업은 재창업기업의 사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

재창업 교육, 조세·법률 등 상담 지원, 자금 지원 등을 말함1).

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, 2022년 기준 신생기업의 4~5년 생존율은 대표자 연령이 30대 미만인 기업이 40대 이상인 기업보다 4.7%p 낮은 것으로 파악됨.

연령대별 기업 생존율 추이

(단위: %)

구분	1년	2년	3년	4년	5년	6년	7년
30대 미만(청년, A)	61.4	48.9	42.6	35.6	29.4	25.7	22.3
40대 이상(중장년, B)	64.1	53.3	46.1	40.3	34.1	30.2	27.3
차 이(A-B)	△2.7	△4.4	△3.5	△4.7	△4.7	△4.5	△5.0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또한 최근 5년간('20~'24) 기업 소멸률(전년도 활동기업 중 당해연도 경제활동 중지기업 비율)은 대표자 연령이 30대 미만인 경우 평균

1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
제42조(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
2.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
3. 조세·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
4. 교육센터의 지정·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
5.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
6.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
7.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
8.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

9.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2. 27.>

④ 제3항에 따른 출연·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5.9%로 40대 이상(9.9%) 보다 6.0%p 높게 나타남.

연령대별 기업 소멸률 추이

(단위: %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	평균
30대 미만(청년)	16.2	16.0	16.2	15.4	15.6	15.9
40대 이상(중장년)	10.1	10.4	10.2	9.4	9.2	9.9

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재창업지원사업에서 청년 재창업기업²⁾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, 청년창업가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자본금, 경험 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활성화 우대 지원뿐만 아니라 재창업도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, 현재도 재창업지원사업 중 일부는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안정적 사업운영 기대된다는 입장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.

2) 중소기업부는 청년재창업기업을 2022년 기준 약 39만 2천여개사로 추정하고 있음.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원이)

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